2005. 10. 21(금) 10:00 제1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보고서

- 1.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거창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5. 10. 11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의안번호 : 제2005 - 54호

라. 상정일자 : 2005. 10. 19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안 제출 이유
-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운영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간 업무조정에 따른 인력조정과 농업기 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조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공무원정원을 668명에서 673명으로 5명 증원함.
- 별지의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함.
 - 본청 : 정원 2명 감원(6급 1명 증원, 7.8.9급 각 1명을 감원)
 - 농업기술센터 : 2명 증원(지도관을 일반직 4급으로 변경하고 일반직 7.8급 각 1명 증원)
 - 사업소 : 5명 증원(6급 1명, 7급 2명, 8.9급 각 1명 증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정원증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을 2005.7.12일자 입법예고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5명의 정원증원(6급1명, 7급1명, 8급2명, 9급1명)에 따른 추가소요액은 196,403천원 정도임.
 - ※조례개정시 거창군 표준정원 601명보다 72명이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표준정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인건비 교부세가 배정되지 아니하므로 인건비에 대한 자체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 이 있음.
- 현재 도서관개관 준비를 위하여 교육문화센터내 도서관담당에 3명의 정원을 확보·배치하고 있어 금회 정원 5명 추가시 총 8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나 관련법 규정에 의한 법정인원이 13명임을 감안할때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별표 정원표에서 본청의 인력을 2명 삭감하고 기술센터에 2명을 증원한 것은 종전 경제과에서 담당하던 사이버농원 운영업무를 기술센터에 이관하는 것으로 사이버농원의 목적과 운영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됨.

- 별표의 본청의 일반직중 6급의 정원을 1명 증원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별표5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규정(6급은 총 정원의 27%범위내)에 의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에 대하여는 보수 및 수당 등에서 4급 상당의 예우를 해 주고 있으며, 소장의 하부조직인 농정과장이 5급인점을 비추어 볼 때 센터소장을 5급 일반직으로 임명할 경우 보직관리 원칙에도 맞지 아니하고 도내 시군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4급 일반직 또는 지도관으로 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4급일반직으로 변경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② 거창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5. 10. 11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의안번호 : 제2005 - 55호

라. 상정일자 : 2005. 10. 19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기존의 「거창군여비조례」는「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 준안과 상이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불합리 한 내용이 있어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 근무지내 출장 시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과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토록 하고, 전용차량배정 공무원(군수, 부군수)에 대하여는 지급치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거창군여비조례」는 1964.3.10 제정된 후 1990.9 .29까지 30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으나, 조례의 일부내용이 현실 과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전면개정 하려는 것임.
- 조례의 주요내용인 상시출장 여비 지급관련 규정은 기존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나, 상이한 것은 운전원에게도 관내 출장여비(5 천원)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중앙부처의「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에서는 운전원은 운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공무원으로 관내출장여비를 지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운전원에 대하여 관내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대하여는 자치단 체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회신된 것으로 운전원에 대하여도 관내 출장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기타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